

도입인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배정한다

-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도입 및 운영상황 -



이경천 (leekc@maf.go.kr)
농림부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국내 농업이 과거의 소규모 가족경영에서 기업형으로 경영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농촌인력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내 농가에서도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1. 제도도입

가. 도입배경

그동안 농업투자 확대로 우리 농업이 과거의 소규모 가족경영에서 기업형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인력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경영체의 인력난이 가중되어 농업경영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실정.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활용실적(1994~2002) : 12,164명
- 불법체류자 2,500명이 농업에

종사(2002.3 법무부에 신고한 인원)

나. 추진경위

농림부가 국무조정실,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연수 제도 도입 협의를 추진(2002.5.15~7.18)

- 2002년 11월 국무조정실 소속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 연수제도 도입 및 국가별 인원을 확정(6개국 5,000명)
-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운영에 관한지침 제정(2003.1.27 농림부고

시)

- 농협중앙회를 모집 및 추천기관으로 지정
- 농협중앙회에 외국인농업연수 협력단을 설치
-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운용요령 제정(2003.2.28)
-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추천의뢰 등 도입절차 추진
-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2003.7.30)
- 농업경영체 이외의 일반법인에 제도 농업연수생을 배정
- 대상품목을 확대(4품목→ 14개 품목)

2. 제도개요

가. 송출국가선정

· 농림부가 농업경영체의 희망을 반영,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 및 국가별 정원을 배정

나. 송출기관

- 송출기관 선정절차
- 농협중앙회장이 송출국가가 새로 지정되거나 도입인원 확대로 송출기관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배정방안에 의하여 송출기관을 선정
- 송출기관은 송출국가로부터 해외인력송출허가를 받아 해외송출실적이 있고, 적정교육시설 및 교육인원이 확보된 기관
- 송출기관은 국내지사를 설립하

여야 함. 다만, 배정인원이 적은 경우 협력업체를 지정·운영 가능

- 국내지사는 요건

- 지사장 및 상시종업원을 연수생 500명까지 4인(통역 1인포함), 추가 500인마다 2인(통역 1인 포함) 추가확보

- 사무실 330㎡이상, 업무용차량 및 전산장비 등

- 송출기관 인원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송출기관별 정원을 배정

-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장이 매년 1회이상 송출기관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 정원배정 및 재계약시 반영

- 송출기관의 임무

- 연수생 관리계획수립, 입출국 지원 및 인계인수, 불법부당행위의 처리 외국인등록지도, 이탈방지 및 출국조치, 건강검진, 근무처·체류 자격변경, 기타 애로해결

다. 농업연수생 자격

- 30세이상 45세이하의 신체건강한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입국제한대상이 아닌 자

- 송출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 농업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라. 농업연수업체

- 대상업종 및 배정 최소영농규모

- 작물재배업(면적) : 시설원예 4,000㎡, 시설버섯 1,000㎡, 과수 20,000㎡, 미나리 16,000㎡, 콩나물 200㎡

- 축산업(축사면적) : 젖소 1,400㎡, 한우우 3,000㎡, 돼지 1,000㎡, 말·레드디어·엘크 250㎡, 산양·꽃사슴·토끼 700㎡, 육계 5,000㎡, 산란계 2,000㎡, 오리·칠면조·매추리 1,000㎡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중 숙박시설 보유자

마. 농업연수생도입 및 농가배정 절차

- 농업경영체가 농협중앙회(또는 시군지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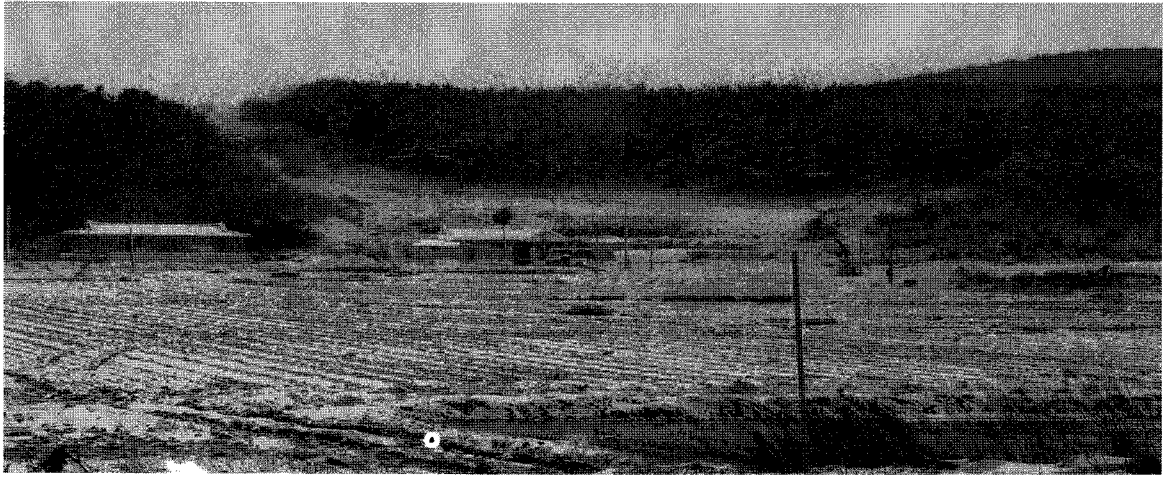


장이 발행하는 영농규모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업연수생 배정신청서 제출

- 농협중앙회는 송출기관별로 도입인원을 배정하고, 송출기관은 배정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농업연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농협 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그 명단중에서 농업연수생을 컴퓨터로 최종 선발

- 송출기관은 최종선발된 농업연수생을 11일이상의 소양교육과 건



강검진 실시후 국내에 입국조치

- 농협중앙회는 입국한 농업연수생에 대하여 3일간의 소양교육과 건강검진 실시후 농가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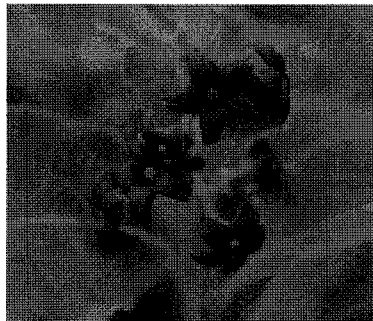
바. 농업연수 조건 및 권익보호

- 농업연수생 체류기간은 3년(1년연수+2년연수취업)
- 연수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이상의 수당,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숙식제공

- 연수취업기간중에는 연수기간중의 보장에 퇴직금 추가지급
- 농협중앙회에 농업연수생상담센터운영

사. 외국인농업연수생에 대한 가축방역대책

- 입국전 11일 이상 및 입국직후 3일간의 격리교육 실시
- 입국시 공항만에서 의복·신발 소독과 육류반입 차단
- 농협,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관계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아.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숙박시설 등 근무여건이 갖춰진 농가에 배정
- 체불, 인권침해방지 등 연수생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기관·단체가 연수업체 지도 강화
-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30~45세의 남자를 도입
-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배정인원 감축, 송출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
- 송출비용과 이탈률이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는 송출비용감축 및

관리 체계개선

3. 농업연수생 도입실적 및 2004년도 계획

가. 2003년 도입실적 : 2개 국가 957명

- 우즈베키스탄 751명, 몽골 206명

나. 2004년 도입계획 : 7개 국가 2,000명

- 몽골 200명, 태국 200명, 캄보디아 200명, 베트남 200명, 키르기스스탄 200명, 중국 900명, 우즈베키스탄 100명

다. 2004년 도입실적(11.4일 현재) : 224명(지금까지 도입인원 누계 1,181명)

- 몽골 119명, 태국 37명, 캄보디아 37명, 베트남 31명

※ 대상업종 확대 등 농업경영체의 편의를 위해 농업연수제도 개선 추진예정(농업연수지침 개정) ●